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b>대기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1 of 8

### [ 개정 이력 ]

Rev	제/개정일자	내 용	비 고
0	2020. 01. 15	ISO 14001 인증추진에 따른 신규제정	
1	2022. 01. 17	임직원 변경에 따른 개정	


### [ 승인 및 검토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환경관리자	환경담당	안전환경팀장
성 명	이 규 성	권 용 재	안 창 근
서 명			
일 자	2022. 01. 17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대기관리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2 of 8

##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책임과 권한
4. 운영절차
5. 관련기록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b>대기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3 of 8

## 1. 목 적

이 지침은 회사의 생산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그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대기 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삼양식품(주)원주공장(이하 "회사"라한다)의 제품 및 활동 등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 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 3.1.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 등의 환경오염 물질

### 3.2. 특정대기 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 3.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

### 3.4. 대기오염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 3.5. 악취

황화수소, 메르캡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3.6. 부적합사항

법규 및 기타 규제요건, 규정, 규칙, 세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관리기준에 부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

### 3.7. 자가측정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으로 대기오염 인자별 그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분석방법은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따름

## 4. 책임과 권한

### 4.1 안전환경팀장

4.1.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에 대해 관련부서에 기술적 지원


4.1.2 환경 관련 법규 해설 배포 및 교육 전달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b>대기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4 of 8

- 4.1.3 비상 사태 발생시 지휘. 통제
- 4.1.4 환경시설에 대한 특정 업무자 지정 및 자격부여
- 4.1.5 대기환경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유지
- 4.2 대기환경담당자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유자격자
  - 4.2.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인허가 사항
  - 4.2.2 대기 관리 규칙 제.개정
  - 4.2.3 방지시설 운전.관리기준 작성 및 적정운전
  - 4.2.4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개선활동
  - 4.2.5 대기관련 법규 요구사항 준수 및 실시
  - 4.2.6 관계기관 지도점검 수검 및 대 관청업무
  - 4.2.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 4.2.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점검 및 시정조치
  - 4.2.9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보존
  - 4.2.10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측정기록부 기록. 보존
- 4.3 시설팀장
  - 4.3.1 생산설비의 변경 또는 신규투자시 환경영향 평가 실시
  - 4.3.2 생산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감소방안 수립 및 실시
  - 4.3.3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유틸리티의 지원 및 관리
  - 4.3.4 환경설비 운전에 따른 관련부서장의 요구 사항 지원
- 4.4 해당팀장
  - 4.4.1 해당 배출시설의 일상 점검 (배기상태, 댐퍼의 개폐, HOOD·DUCT의 파손·부식여부 등을 확인하여 함)
  - 4.4.2 작업지도서 및 설비운전 기준에 맞게 적정 운전
  - 4.4.3 법적 사항 준수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의 교육 이수
  - 4.4.4 해당 설비 이상 발생 즉시 해당부서장 및 환경담당부서로 신속 연락
- 4.5 물류팀장
  - 4.5.1 회사 업무용 운행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업무

## 5. 운영절차

- 5.1 대기환경 시설의 설치
  - 5.1.1 시설팀장은 신규설비 설치시나 폐기 시에는 관련 법규 등록부(인허가증)를 참고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출시설에 해당될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b>대기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5 of 8

경우 안전환경팀에 통보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적법하게 배출시설을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5.1.2 시설팀장은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환경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5.1.3 시설팀장은 인.허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5.1.4 안전환경팀에서 신.증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설비운전부서는 가동을 절대 불가하며 인.허가 취득후 초기 가동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안전환경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 5.2 관리방법 및 절차

5.2.1 안전환경팀장은 방지시설 운영 시 운전 및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5.2.2 안전환경팀장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배출기준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다음의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하여야 하며,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1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1) 여과집진시설

- (1) 일일 여과필터상태 확인 및 청소
- (2) 1회/연 여과필터 교체
- (3) 1회/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외부기관 위탁처리)

### 2) 세정집진시설

- (1) 세정수 오염상태 확인 후 교체
- (2) 약품 투입량 점검
- (3) PH 센서 정상가동 확인
- (4) 2회/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외부기관 위탁처리)

### 3) 보일러

- (1) 연료 사용량 및 가스 발랭량 확인 및 관리
- (2) 적정 공기비율 확인 및 관리
- (3) 1회/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외부기관 위탁처리)

5.2.3 안전환경팀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대기방지 시설 점검일지에 따라 점검.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2.4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팀장은 즉시 조치 하여야 하며, 해당설비가 정상 운전 되기 전까지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3 교육 훈련

대기환경담당자는 법정 사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3년/1회)

## 5.4 측정 및 기록

5.4.1 대기환경담당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내로 배출되고 있는지 배출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b>대기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6 of 8

구별로 대기 오염물질 측정항목 및 주기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기 자가측정 기록서에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4.2 측정 대행시 대행업체는 관계법령에 의한규정에 따라 심사 되어야 하며 대기환경 담당자는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은 측정 대행업체의 자가 측정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5.4.3 측정 결과에 대하여 법규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어긋나는지 평가해야 하며 중요한 측정 및 관리 항목에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시스템)에 등록 관리 하여야 한다.

5.4.4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의 관리는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 6. 관련기록

6.1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시스템)에 등록

6.2 대기 자가측정 기록부 :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시스템)에 등록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b>대기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7 of 8

< 붙임 1>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31>

(앞 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출구	배출시설	가동시간	비고
1	외종		
2	외종		
3	외종		
4	외종		
5	외종		

\* 비고란은 정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2.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지시설명	설치위치	전력사용량 (kW/h)	처리용량 (m <sup>3</sup> /min)	처리오염물질	처리농도 (ppm 또는 mg/Sm <sup>3</sup> )	처리효율 (%)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 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

문서번호	SY(원주)-SHE-G-31
제정일자	2020. 01. 15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8 of 8

## 대기관리

(뒤 쪽)

###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방지시설명	배출구별	보수기간	보수자	보수명세

### 3. 자가측정사항

측정일:

①기상			②기온	③습도	④기압	⑤풍향	⑥풍속
<input type="checkbox"/> 맑음, <input type="checkbox"/> 흐림, <input type="checkbox"/> 구름, <input type="checkbox"/> 눈, <input type="checkbox"/> 비			℃	%	mb	풍	m/sec
⑦배출구 번호	⑧주요배출 시설명	⑨측정 항목	⑩측정농도 (ppm, mg/Sm <sup>3</sup> )	⑪일일유량 (Sm <sup>3</sup> /일)	⑫일일배출량 (kg/일)	⑬검사 기기명	⑭검사 방법
⑮연료명 및 사용량 ( ) 일)							
⑯원료명 및 사용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⑰환경기술인의의견							
⑱기 타							
환경기술인 직급 :			성명 :		(인)		